



수도료 고지서 발부 정책: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1. **목적:** 본 정책은 “수도 차단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법안 998을 준수하기 수립되었습니다(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900, 이하 참조). 본 정책은 피스모 비치시(City of Pismo Beach, 이하 “시”)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의 수도료 고지서 발부 사무소에 805-773-4655번 전화로 또는 ub@pismo beach.org으로 이메일로 연락하여 이 정책의 조건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발효일:** 본 정책은 2020년 2월 1일에 발효됩니다.
3. **공표 언어:** 본 정책과 본 정책에서 필요한 서면 통지는 영어, 민법 섹션 1632에 열거된 언어들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 포함) 및 “시”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최소한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입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4.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선행 요건**
 - A. “시”는 고객이 최소한 60일 동안 연체할 때까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7 근무일 전에, “시”는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전화로 또는 서면 통지로 연락해야 합니다.
 - B. “시”는 (A)호에 따라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할 시, 시 직원은 본 정책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시” 직원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 옵션을 논의하자고 제의해야 하고, 이 옵션에는 대안의 납부 일정, 연기 납부, 최소 납부, 미납 잔액의 분할 납부 요청 절차, 그리고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 신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C. “시”는 (A)호에 따라 계정에 이름이 등록된 고객에게 서면 통지로 연락할 시, 납부 연체 및 임박한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서면 통지는 등록 주소로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주택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서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로도, “현 거주자” 앞으로 송부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명백하고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 2) 연체 금액.

- 3)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거나 납부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기일, 이 기일은 행정 서비스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의 재량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요금 고지서의 요금일 연체된 날짜로부터 60일이어야 합니다.
- 4) 연체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간의 연장을 위해 적용하는 과정의 설명.
- 5)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및 이의 제기 신청 절차의 설명.
- 6) 연체된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의 분할 납부가 포함된, 연기된, 감액된, 또는 대안의 납부 일정을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절차의 설명.
- 7) “시”의 전화 번호 및 게재된 “시”의 정책으로 이동하는 웹 링크.

5. 선의의 통지 요건

- A. “시”가 고객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로 연락할 수 없고, 서면 통지가 배달 불가로 우편으로 반송되는 경우, “시”는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거주지를 방문하고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임박한 중단 통지서와 요금 미납으로 인한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시”의 정책을 남겨 두어야 하거나,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 두기 위해 다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B. 고객이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납부 기일 전에 그리고 “시”가 조사하기 전에 “시”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의 조사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행정 서비스 국장에게 요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시 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 의회 회의가 열리기 최소한 7일 전에 이의 제기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 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시”는 이의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주택용 수도 서비스 중단 금지

- A. “시”는 다음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건물의 거주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일차 진료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일차 진료 기관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 법의 제14088조, (b)항, (1)호, (A)목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 2) 고객이 자신이 “시”의 정상적 요금 고지 주기 내에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합니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주 생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또는 고객이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은 “시”의 정상적 요금 고지 주기 내에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3) 고객이 모든 연체 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 약정, 대안의 납부 일정, 또는 연기되거나 감액된 납부 계획을 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B. 상기 조건들인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다음 옵션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의해야 합니다.

- 1) 미납 잔액의 분할 납부.
- 2) 대안의 납부 일정을 체결.
- 3) 다른 요금 납부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재정적으로 처리된 미납 잔액의 부분 또는 전부 감액.
- 4) 일시적 납부 연기.

C. 행정 서비스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는 고객이 제6.B호에 기술된 납부 옵션들 중 어느 것의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납부 옵션의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미불 잔액은 12개월 내에 납부되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 서비스 국장은 미납 잔액의 부분 또는 전부 감액이 시 의회가 승인하고 명백히 그렇게 감액할 목적으로 수도 사업 기금 예산으로 이전한 수도 사업 기금 수입으로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당해 감액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주택용 수도 서비스는 “시”가 다음 상황들 중 어느 경우에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최종 통지서를 게시하고 최소한 5 근무일이 지난 후에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분할 납부 약정, 대안의 납부 일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2) 분할 납부 약정, 대안의 납부 일정, 또는 연체 요금에 대한 연기 또는 감액 납부 계획의 의무를 지는 동안, 고객이 자신의 현재 주택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수도 서비스의 복구

A. “시”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것을 “시”에게 실증하는 거주자 고객을 위해, “시”는 다음 조치를 두 가지 모두 취해야 합니다.

- 1) 정상적인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재연결에 대해 재연결 서비스 요금을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또는 50달러 미만인 경우 실비로 책정합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의 재연결에 대해, “시”는

150달러, 또는 150달러 미만인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재연결 서비스 요금을 책정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재연결에 대한 50달러의 최대 금액 및 근무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연결에 대한 150달러의 최대 금액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경에 대해 매년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2월에서 당년도 2월까지 12개월에 대해 보고된 소비자 물가 지수 - U (로스앤젤레스-롱비치-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주 모든 도시 소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연체 요금에 대한 이자를 12개월마다 1번씩 면제합니다.

B. 거주자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사회보장 생활 보조금/주 생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또는 고객이 가구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신고하는 경우, “시”는 그 고객이 연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의 가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8. 임대주와 세입자 관계를 수반하는 서비스

A. “시”가 단독-가정 주택, 다세대 주거용 건축물, 및 이동식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량된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주택, 건축물, 또는 공원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등록 고객인 경우, “시”는 당해 계정이 연체되어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시”는 종료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 서면 통지에 의해,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서면 통지는 또한 거주자에게, 연체 계정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 없이, 수도 서비스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B. “시”는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고 법과 “시”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들 중 한 명 이상이 당해 계정에 부과되는 차후 요금에 대해 “시”가 만족할 정도로 책임을 질 의향이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는 \$180의 보증금의 납부 및 행정 서비스 국장, 또는 그 피지명자가 거주자 신청인이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시”가 확신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 서비스 신청서 작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건이 포함됨), 또는 “시”가 “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시”는 서비스 약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시”가 확신하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 보고 요건

“시”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 건수를 매년 “시”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주 수도 자원 관리 위원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0. 본 정책의 제한

본 정책의 어느 조항도 본 정책에 명시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가 중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지도 않고 달리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11. 고객은 주택용 수도 서비스에 대해 발부된 요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은 “시”가 발부한 요금 고지서 또는 부과한 요금에 대해 이의 제기를 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760 Mattie Road, Pismo Beach, CA 93449에 소재한 “시”의 행정 서비스 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시”는 이의 제기건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B. 고객이 요금 고지서의 요금에 대한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납부 기일 전에 그리고 “시”가 조사하기 전에 “시”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의 조사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은 행정 서비스 국장에게 요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시 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 의회 회의가 열리기 최소한 7일 전에 이의 제기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 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시”는 이의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주택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